

『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07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도시지역 관사에서 생활하는 근무자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원거리이고 가족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생활에 필요한 비품도 주거지에 두고 와야 할 형편이나, 관사에는 생활 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어 왔음

이러한 도시지역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일부 생활 비품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모든 관사에 냉장고, TV, 세탁기, 옷장, 가스레인지 등 생활 비품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5조)

나.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마련에 시일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함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8월 2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2, 팩스 032-440-8784, 이메일 : tico3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호에해당”을 “호에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냉장고, TV, 세탁기, 옷장, 가스렌지 등 생활비품 구입
4. 1급·2급 관사의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
5. 1급·2급 관사의 전기·전화·가스·수도요금
6. 1급·2급 관사가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

제55조제7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	제55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---- ----- ----- ----- 호에 해당----- ----- 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(1급·2급관사에 한함)</u>	3. <u>냉장고, TV, 세탁기, 옷장, 가스렌지 등 생활비품 구입</u>
4. <u>전기요금(1급·2급관사에 한함)</u>	4. <u>1급·2급 관사의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</u>
5. <u>전화요금(1급·2급관사에 한함)</u>	5. <u>1급·2급 관사의 전기·전화·가스·수도요금</u>
6. <u>수도요금(1급·2급관사에 한함)</u>	6. <u>1급·2급 관사가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</u>
7. <u>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1급·2급관사에 한함)</u>	<u><삭 제></u>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(조례의 제정·운영) 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0조(관사의 구분) 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(관사의 관리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 당 없 음”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】

제96조(조례의 제정·운영)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】

제50조(관사의 구분)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1급관사 : 교육감 관사
2. 2급관사 : 부교육감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, 교육장 관사
3. 3급관사 : 1급·2급관사 이외의 관사(강화군, 옹진군, 중구 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관사에 한함)

【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】

제31조 (관사의 관리)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조례 제51조와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(별지 제26호 서식)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후 5일내에 관사입주신고서(별지 제27호 서식) 및 서약서(별지 제28호 서식)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개정안에 따라 제3급 관사에 세대별로 생활 비품 구입 시 예산이 필요함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현재 관사 총 거주세대 : 579세대
- 세대별 생활비품 소요금액(1세대 기준)

(단위 : 원)

연번	품목	규격	단가	비고
1	냉 장 고	282L	509,000	
2	세 탁 기	일반형, 10Kg	379,000	
3	TV	32인치, LCD	860,000	
4	가스렌지	2구	147,000	
5	옷 장		500,000	싱글기준
계			2,395,000	

※ 2012년 월간 물가자료 참고(VAT 포함)

나. 추계 결과

- 소요예산액 : 1,386,705천원(총 579세대× 2,395,000원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재원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계
3급관사 생활비품 구입	462,235	462,235	462,235	1,386,705

※ 2013년 ~ 2015년도까지 3년간 1년에 193세대 구입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

실·국(부서)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[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 등 심의 3.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7. 기타 문제점		
실·국(지역)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